

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1. 소득자	① 성 명	② 주민등록번호
	③ 주 소 (전화번호:)	
2. 국외 거주기간	④ 국외거주시작일 또는 시작 과세기간	⑤ 국외거주종료일 또는 종료 과세기간
3. 원천징수 의무자	⑥ 업 태	⑦ 업 태(종목)
	⑧ 소재지	⑨ 사업자등록번호
	⑩ 감면기간 시작일 : 년 월 일 종료일 : 년 월 일 (시작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감면 가능)	
	⑪ 연구기관 유형 []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6조의3제2항제1호 []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6조의3제2항제2호 []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6조의3제2항제3호 []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6조의3제2항제4호 []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6조의3제2항제5호 []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6조의3제2항제6호 []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6조의3제2항제7호 []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6조의3제2항제8호	
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 청 인

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첨부서류	1. 박사학위증명서 2. 「재외국민등록법」 제7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등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.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제10조제4항제3호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증명서 4.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지 제5호서식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, 같은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및 그 밖에 영 제16조의3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

작성방법

-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청은 취업한 날 또는 최초 감면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5개 과세기간동안 국외에서 거주하여야 합니다.
- "연구기관 유형"은 소득자가 국내에 취업한 연구기관 등이 해당하는 항목을 표시합니다.
- "감면기간"란에는 소득세 감면을 받은 최초 취업일을 시작일로 기재하고 시작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종료일로 기재합니다.